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 호 부터는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행규칙 제6조부터 조문별로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규)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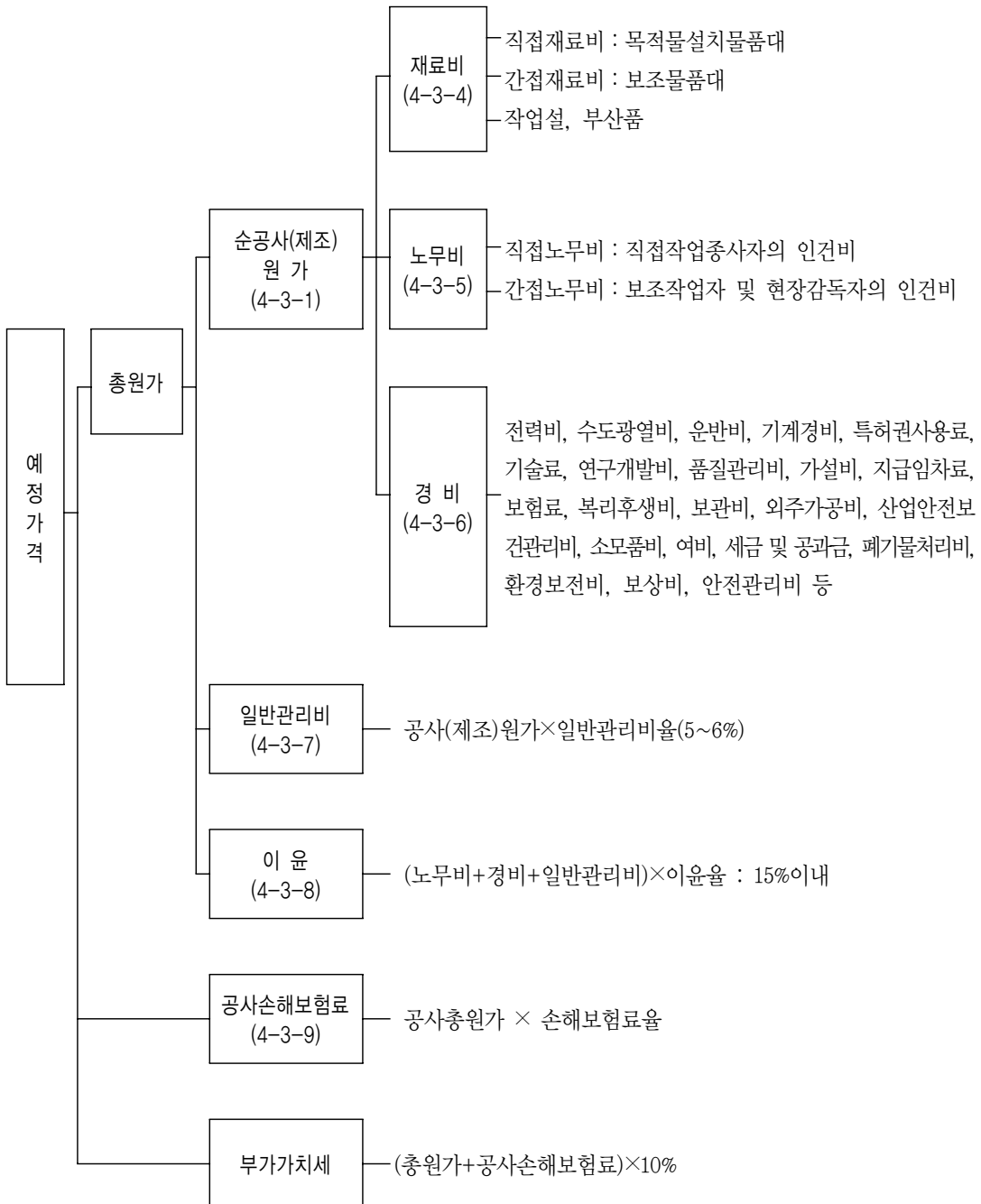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은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의 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진다. 먼저 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의 원가 계산



가. 재료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성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주요재료비와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로서 부분품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간접재료비는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와 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연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

노무비는 노무량×노무비 단가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노무비는 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구성되며, 직접노무비의 세부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를 초과할 수 없다

(4)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수당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요건은 직접노무비와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노무비의 산정방법은 직접노무비는 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은 (1) 직접계상방법과 (2) 비율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비율분석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직접계상방법의 계상기준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직접계상방법의 계상기준 및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지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다음은 비율분석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계상기준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상 한다

〈 공 식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방법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여 간접노무비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으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동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등의 부족으로 적용이 일반적으로 용이한 동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통상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14.5	
	토 목 공 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14.5%) / 3 = 15.5%

다. 경비

경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의 산출은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경비의 세 비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를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 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 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라.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에 대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마.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계약 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바.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text{공사손해보험료} = \text{공사총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서식은 행정안전부 예규(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준 서식은 아래와 같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제조부문의 원가 계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성형태를 이루는 주요재료비와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로서 부분품비로 구성된다고 할수 있다.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과 내용연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으로 구분된다.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나.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하며 공사부분의 노무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경비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등 공사와 유사하므로 별도설명은 생략하고 공사에는 없으나 제조에만 있는 비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①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②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③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④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여,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아래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시설공사 및 제조부분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마. 이 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한편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이 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학술용역의 원가계산

1. 학술연구용역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용역의 종류와 유형은 그 종류가 매우다양하다.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연구용역이 대부분이며 계약체결방식은 위탁형 용역이다.

학술연구용역을 구성하는 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며 인건비는 연구원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연구원의 유형을 살펴보자.

가.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된다.

나.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목별로 산정기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인건비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2006년도는 아래의 단가에 의하되 그 이후의 연도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등 급	구 분	금 액(원)
책 임 연구 원		월 2,416,620원
연구 원		월 1,853,030원
연구 보조 원		월 1,238,690원
보 조 원		월 929,050원

나.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유인물비는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

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통신비는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라. 이윤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율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구 원 연구 보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율()%				
총 원 가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학술용역 이외에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 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학술연구 용역이외에 연구용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유물발굴조사 용역, 경비용역, 여론조사용역, 소프트웨어 용역, 노점상 단속용역, 병충해 방제용역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개별용역별 원가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개별용역별 세부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행정안전부 실국별 홈페이지 - **지방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요령 199** (2008. 8, 19)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위조문은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의 적용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단위당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며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란 시중의 물가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으로서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이 있다.

제 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감정가격, 견적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달가격이나 물가조사기관의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이러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견적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을 적요한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다.

제2항의 규정은 도서나 오지지역에 대하여는 노임단가를 당초노임단가에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나 오지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하겠다.☺

